

## 사료 시책 개선방안 건의(안)

외화절약을 위해서 취해진 현행 사료시책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할 경우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외화낭비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배합사료 제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내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다.

### 1. 곡물수입한도 관리제도의 문제점

가. 현재 우리나라 배합사료 업계는 제품경쟁의 자율화가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외화절약이라는 대명제에 눌려 전체 곡물 사용은 물론, 개별 공장의 수입사료 곡물사용이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제품생산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나. '86년도 곡류사용 한도량은 384만 5천톤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물량은 461만 7천톤이었으며, '87년도 사료도입 퀴터는 429만톤으로서 '86년도의 도입물량인 454만톤보다도 25만톤이 부족하게 책정되었다.

다. 이렇게 볼 때 퀴터제도를 통해 사료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부존자원활용을 유도한다는

정책취지는 좋으나, 근본적으로 국내 부존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 경작자들에게 생산유인을 줄 수 있는 곡물 수입제도로 수입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태하에서는 그 실효성이 없다.

### 2. 사료곡물 사용비율 제한의 문제점

가. 외화절약을 위해 취해진 현행 사료수급 계획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할 경우, 오히려 여러가지 제약요건으로 외화낭비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배합사료 제조원가가 높아진다(표 1 참조).

나. 유리한 원료를 임의로 수입하여 사용할

표 1. 원료사용 제한에 따른 사료생산원료 가격의 변화

상황	제한 조건	곡물 사용비율	톤당사료생산원가	원가지수
1	없음	73. 15%	113, 022원	100
2	일부 품목 수입 제한	69. 32%	115, 980원	102. 6
3	곡류 사용 제한	63. 31%	116, 552원	103. 1
4	곡류 사용 제한	56. 98%	118, 106원	104. 5
5	곡류사용제한 및 국산곡류사용	61. 57%	148, 795원	131. 7

주: 1) 도입곡류 56. 98%+국산곡류 4. 59%

자료: 배합사료의 수입개방과 국내사료의 국제경쟁력 강화·백인기, 한국영양사료연구회보, 1986. 73쪽

### 경우(상황 1)

곡류사용을 56. 98%로 제한할 때(상황 4) 보다 사료생산원가가 톤당 5, 084원, 또는 연간391억원이 절감되며, 또한 곡류 사용제한에다 국산 옥수수와 보리를 사용할 때(상황 5) 보다는 톤당 35, 773원, 또는 연간 2, 752억원이 절감된다(표 2 참조).

### 3. 대두박 공급의 문제점

가. 수입대두를 가공한 후 국내 사료업계에 공급하는 국산 가공 대두박 가격은 수입 대두박 가격보다 1.3배 이상 비싼 현실이다.

나. 최근 대두박 수요는 대두유 수요보다 수요증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두유 가격안정을 위해서 사료용 대두 수입량이 대두유 수요를 기준으로 책정됨으로써 상당량의 대두박 부족량을 별도 수입하고 있으나, 대두박 수입이 퀴타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그만큼 축산농가에게 사료원가의 상승으로 전가되고 있다.

### 4. 국내시판 배합사료 가격의 문제점

가. '86. 10월 현재 국제곡물가격은 '85년 12월 대비 옥수수가 33%, 수수가 21%, 사료용 밀이 30%, 호밀이 26% 각각 하락하였으며, '84년 대비 각각 37%, 37%, 37%, 38% 하락하였고, 또한 '83년 12월 대비 각각 47%, 50%, 46%, 43% 하락하였으므로

나. 수입곡물 배합비율과 환율변동 및 기타 정책변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86. 10 배합사료 가격은 최소한 '85. 12월 대비 15% 이상, '84년 12월 대비 23% 이상, '83년 12월 대비 35% 이상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86. 10 국내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85. 12월 대비 약 6~7%, '84. 12월 대비 약 16%, '83. 12월 대비 약 16% 하락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국내 배합사료 유통현실은, 거래 조건에 따라 표시가격보다 10~20% 할인 판매함으로써 양축가들은 사료의 마진에 의혹을 품고 있는가하면, 모든 상품유통의 근대화와 공정거래를 주장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가격제도가 방치 또는 묵인되고 있는가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대리점에서 소량 구입시 표시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영세부업 양축가들은 현금으로 대량구입하는 양축가들보다 오히려 10~20% 비싸게 사료를 구입하는 실정이다.

라. 또한 최근 곡물의 사용비율 제한으로 값싼 곡류원료 대신 부득불 값비싼 강피류(소맥피)를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당초 기대하였던 외화절감 효과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86년도 1일 돼지 1두당 평균 사료소비량이 '83년도보다 8.4%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84년도보다는 무려 12.2% 증가함으로써 사료효율이 나빠졌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66

작년도의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 곡물 가격의 하락으로 86년대비 15% 이상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6~7% 밖에 인하되지 않아 양축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99

## 5. 국내산 보리, 옥수수 사용 문제점

가. 현재 국내 사료업계는 부존자원 활용 차원에서 국내산 보리 및 옥수수를 인수 사용하고 있다.

양곡용 보리 재고가 크게 줄어든 85년과 86년도에 국내 사료업계는 국내산 보리를 각각 28만 7천톤, 1만 2천톤, 국내산 옥수수를 각각 5만 7천톤, 5만 5천톤을 인수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국내산 원료의 경우 국내산 생산비용(DRC)이 불리함으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보다 국내산 옥수수의 경우 3.6배, 국내산 보리의 경우 4.8배 비싼 가격이다.

## 6. 사료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합사료원료는 곡류의 경우 7%, 강피류 7%, 식물성 박류 10%

표 2. 관련국가와의 사료세율 비교표

품목별	국가별		한 국		대 만		일 본	
	관세	부가세	관세	부가세	관세	부가세	관세	부가세
옥 수 수	7%	10%	3%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소 맥	5%	1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대 두 박	10%	10%	1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은 대부분의 원료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와같이 인접 수출경쟁국보다 월등히 높은 조세제도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표2 참조).

나. 양돈의 주요 원자재인 사료구입시 양축가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원자재 구입시 납부한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며, 대부분의 양축가는 부가세 신고 불능상태이므로 양돈원자재의 부가세는 축산물의 생산비에 전액 산입되고 있다.

## 대책건의

배합사료는 양돈생산비의 60~70%를 점유하는 주요 원자재로서 배합사료 구입 가격추이는 양돈경영의 교역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사료생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고품질의 사료를 적정한 가격에 생산하여 양축가에게 공급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옥수수 및 보리 경작농민의 수익보장과 금후에 닥쳐올 식량 무기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내 곡류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국내 경작자들에게 생산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곡물 수입제도(예, 일본의 수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현행 곡물 수입 퀀터제나 사료곡물 사용 비율제한 등의 대중요법으로서는 외화절감은 물론, 수입곡물의 수급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전체 곡류 사용과 개별 사료공장의 수입 사료곡물사용을 제약하는 곡물 수입 할당제를

폐지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2.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사료용 소

맥들의 곡물사용 비율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3. 대두박 수입을 자유화하고 국산 대두박 가격을 국제 시세로 인하 조치하여야 한다.

4. 국제곡물시세의 변동에 따라 국내 시판 배합사료 가격이 적절히 연동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실질적인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영세 양 축농가를 보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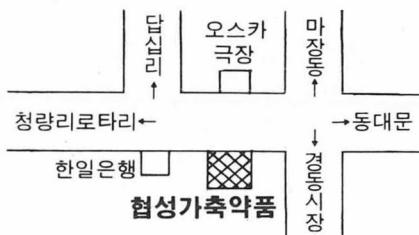
5. 배합사료 생산원가를 심의하고, 마진을 공개하여야 한다.

6. 자가배합시설 인정기준을 설정하여 이 시설 기준을 갖춘 양축가에게 직접 도입원료를 배정하여야 한다.

7. 양축가의 조세경감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행 사료 부가가치세와 사료관세를 인하 또는 면세조치를 하여 축산물의 생산비를 낮추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축산물을 수출전략으로써 일부 축산물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동물약품 도매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3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축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등 일체총판  
주야 전화상담환영(질병문의 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주문 환영(신속하고 정확한 우송)



**협성가축약품**  
\* 동물 약품 도매전문 \*

〒 131 서울·동대문구 제기 1동 654  
(オス카극장 앞)

본사 967-8779, 964-4870  
청량리영업소 965-9778